



알고 싶은 법률 상식

## 고유의 상속분에 가산...기여분 제도



김낙의  
법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위하여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08조의2).

즉 유산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액을 가산하는 것이다.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기여분을 인정받은 자는 기여분을 가산한 액이 고유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며, 특별히 기여를 한 자이어야 한다.

기여분 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은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다.

가사노동에 의한 배우자의 기여는 특별한 기여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자녀 역시 단순한 동거 사실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적어도 부모와 동거를 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향은 최근 변화되어 기여분 인정 수준이 완화되고 있다.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며 제사를 모신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의 농사일을 도운 경우에도 일정 부분 기여분을 인정한바 있다.

점점 개인주의로 되어가는 가족 관계의 변화에 발맞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 구체적 현실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